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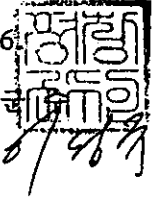
1. 1994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 更正豫算案	275
2. '94地方債借入計劃同意案	291
3. 平昌郡議會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299
4. 平昌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05
5.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23
6. 珍富圖書館建立費支援에 關한 建議에 對한 回信	328
7. '94年度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	330

199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평 창 군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5,73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429백만원과 특별회계 309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291백만원, 세외수입 1,155백만원, 지방양여금 1,517백만원, 보조금 2,166백만원, 지방채 3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0백만원, 사업외수입 146백만원, 보조금 183백만원, 지방채 Δ 100백만원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134백만원, 물건비 313백만원, 이전경비 Δ 97백만원, 자본지출 5,077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Δ 200백만원, 예비비및 기타 20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63백만원, 자본지출 116백만원, 용자 및 출자 28백만원, 기타 10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 :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199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 창 군

예 산 총 칙

1994 년도 [1회추경]

• 제1조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53,169,207	1,595,076
일 반 회 계	49,820,743	1,494,622
특 별 회 계	3,348,464	100,4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092
	주택사업특별회계	28,19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711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6,03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5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267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칭은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지무부담행위는 별첨 '지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지 발행 한도액은 **55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99,024천원으로 한다.

예산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증△감
계	53,169,207	47,431,065	5,738,142
일반회계	49,820,743	44,392,107	5,428,636
특별회계	3,348,464	3,038,958	309,506
상수도사업	1,503,099	1,323,676	179,423
주택사업	939,877	871,883	67,994
의료보호기금	557,043	551,810	5,233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201,068	201,068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1,795	43,634	28,161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75,582	46,887	28,695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0	0	0
공유임야 관리 사업	0	0	0
지방양여금 사업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세입	계	53,169,207	100%	47,431,065	100%	5,738,142	49,820,743	100%	44,392,107	100%	5,428,636	3,348,464	100%	3,038,958	100%	309,506
	지방세	6,038,550	11%	5,747,008	12%	291,542	6,038,550	12%	5,747,008	13%	291,542	0	0%	0	0%	0
	세외수입	8,379,146	16%	6,998,040	15%	1,381,106	6,069,582	12%	4,915,082	11%	1,154,500	2,309,564	69%	2,082,958	69%	226,606
	경상적세외수입	4,179,678	8%	4,045,767	9%	133,911	3,071,705	6%	3,016,705	7%	55,000	1,107,973	33%	1,029,062	34%	78,911
	입시적세외수입	4,199,468	8%	2,952,273	6%	1,247,195	2,997,877	6%	1,898,377	4%	1,099,500	1,201,591	36%	1,053,896	35%	147,695
	지방교부세	19,578,000	37%	19,578,000	41%	0	19,578,000	39%	19,578,000	44%	0	0	0%	0	0%	0
	지방양여금	4,506,207	8%	2,989,241	6%	1,516,966	4,506,207	9%	2,989,241	7%	1,516,966	0	0%	0	0%	0
	보조금	14,117,304	27%	11,768,776	25%	2,348,528	13,328,404	27%	11,162,776	25%	2,165,628	788,900	24%	606,000	20%	182,900
	국고보조금	6,227,184	12%	6,167,241	13%	59,943	5,791,384	12%	5,731,441	13%	59,943	435,800	13%	435,800	14%	0
	도비보조금	7,890,120	15%	5,601,535	12%	2,288,585	7,537,020	15%	5,431,335	12%	2,105,685	353,100	11%	170,200	6%	182,900
지방채	550,000	1%	350,000	1%	200,000	300,000	1%	0	0%	300,000	250,000	7%	350,000	12%	-100,000	
세출	계	53,169,207	100%	47,431,065	100%	5,738,142	49,820,743	100%	44,392,107	100%	5,428,636	3,348,464	100%	3,038,958	100%	309,506
	인건비	9,927,535	19%	9,792,930	21%	134,605	9,916,375	20%	9,782,170	22%	134,205	11,160	0%	10,760	0%	400
	물건비	7,100,324	13%	6,724,764	14%	375,560	6,345,323	13%	6,032,696	14%	312,627	755,001	23%	692,068	23%	62,933
	이전경비	5,163,344	10%	5,260,454	11%	-97,110	4,387,803	9%	4,484,913	10%	-97,110	775,541	23%	775,541	26%	0
	자본지출	28,919,021	54%	23,726,093	50%	5,192,928	27,858,281	56%	22,781,443	51%	5,076,838	1,060,740	32%	944,650	31%	116,090
	유자및출자	272,663	1%	244,502	1%	28,161	0	0%	0	0%	0	272,663	8%	244,502	8%	28,161
	보건계원	754,431	1%	754,431	2%	0	392,384	1%	392,384	1%	0	362,047	11%	362,047	12%	0
	내부거래	255,501	0%	455,501	1%	-200,000	255,501	1%	455,501	1%	-200,000	0	0%	0	0%	0
	기타	213,441	0%	29,390	0%	184,051	166,052	0%	20,000	0%	146,052	47,389	1%	9,390	0%	37,999
	예비비	562,947	1%	443,000	1%	119,947	499,024	1%	443,000	1%	56,024	63,923	2%	0	0%	63,923

審 查 報 告 書

1994年 7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 審 查 經 過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4년도 7월 2일 , 평창군수
- 나. 회 부 일 자 : 1994년도 7월 14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4회 평창군의회(임사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 7. 15 상정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 7. 20 의결

2 . 提 案 說 明 的 要 旨

(提案說明者 : 企劃室長 高昶植)

- 1994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474억3,106만원의 12%인 57억3,814만원이 증가한 531억6,920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4억2,863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954만원이 증가 하였음.

3 .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辛敎善)

가. 一般會計 歲入部分

-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중 법인세활 2억9,154만원이 증액되므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과년도 수입의 송정택지매각대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상 수입 77억원에 대하여 저조한 실적(49%)이므로 택지분양에 따른 세수결함이 예상됨.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3년도 수해집단지주 사업이 이월된 사업으로서 연립주택 건립분양금 8억5,168만원은 금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미분양시 세수결함이 예상됨.
- 순세계 잉여금은 93년도 송정택지매각부진등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금회추경 5,429만4천원을 포함 1억4,429만4천원임.
- 부담금 수입은 군청앞 택지조성사업이 소유자의 동의거부로 사업이 백지화하여 6억원이 전액 삭감하였음.

나. 一般會計 歲出部分

- 금회 추경규모는 12%가 신장 되었으며 기본적 경비 1.7%, 사업비 20%, 기타경비는 43%가 신장되었음.
- 일반행정비는 대민활동비와 도암면청사 신축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농촌오수처리장 설치, 소규모 소각로 설치등의 사업비가 계상되므로 증가 하였음.

- 임업비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적기 집행이 지연하고 추경에 과목을 경정하므로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지역개발비는 수해주택 집단이주 건축공사비 및 철거보상금과 봉평 소도읍 정비사업등이 계상되므로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1억1,696만6천 원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추가내시 되었음.
-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사업계획의 증감 변경등으로 5,99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 비율에 따른 사업 변경과 신규 사업비 내시로 21억568만5천원이 증가 하여 군비부담의 요인이 되었음.
- 지방채는 도암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300,000천원을 차입하였음.

다. 特別會計 部分

-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95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1% 증가 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은 과년도 결산잉여금, 재분양금 상수도요금 인상분과, 맑은물공급 종합대책 사업추진 도비보조금이 계상 되었음.

-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 증가 하였으며 사업비는 용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운영수수료와 노후시설보수, 신규상수도 시설사업비가 증액 되었고, 기타경비는 의료보호기금 반환금과 농공지구 지방채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4. 質疑,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수해주택 집단이주 택지분양수입과 연립주택 분양수입은 시행시기감안시 세입및 세출예산에 결함이 예상된다.</p> <p>○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은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군의 재정형편감안시 예산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사업시행기간을 늘려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p> <p>○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 되는데, 사실상 지원받을자를 면밀히 파악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p> <p>○ 산림사업비는 매년 과목경정의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음. 당초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편성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람.</p>	<p>○ 동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며 지역의 입지여건 고려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봄.</p> <p>○ 조기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봄. 따라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시행하면서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지원을 최대한 받고 규모등을 재조정,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신축토록 노력하겠음.</p> <p>○ 감소는 도시이주 및 사망등으로 기인되며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고 미확인으로 미부양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p> <p>○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계획이 조정됨.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94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촌상수도 사업비 감액 사유는?</p> <p>○ 평창백오아파트 보수는 성격상 시공업체가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군예산에 하자보수비를 계상한 사유는?</p>	<p>○ 수혜 주민 고려 , 상수도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음.</p> <p>○ 시공업체가 준공이후 파산되어 하자보수를 할 수 없게되어 군이 민원해소를 위해 선지원후 시공업체로 하여 보수비를 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중에 있음.</p>

5. 討論要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報告 要旨

가. 소위원회 위원 : 박용태, 이치옥, 주태원위원(3명)

나. 보고자 : 박용태 위원

다. 주요요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 2,500만원을 감액 일반행정비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6,700만원을 삭감, 평창상수도 고속응집 침전기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음.

7. 修正案의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7월19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나. 수정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백오아파트 보수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도암면 청사신축 설계비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중

평창상수도 구매수지 철거및 체육공원조성, 월정상수도 전기승압및 모터중설사업비 6,700만원을 삭감하여 평창상수도 고속응집 침전기 설치 사업비를 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3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8. 審査結果

(수정안 가결)

9. 少數意見 要旨

-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계속사업비는 군의재정 부담능력을 감안, 시행 여부를 재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고,
- 도암 수해주택 집단이주 택지분양및 연립주택 분양사업은 시행시기와 세입 세출 종료시점을 고려할때 예산편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10. 其他必要한 事項

(없 음)

첨부 : 1994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 부. 끝.

1994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 예산총칙 : 제1조 및 7조 변동사항 없음.

2. 일반회계 :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제출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2000 일반 행정 비			16,086,879		25,000	16,111,879	
2400 재무 행정 비			1,191,907		25,000	1,216,907	
	2420	회계 및 재산 관리	994,300		25,000	969,300	
		2422 재산관리	795,793		25,000	820,793	도암면 청사 설계 용역비 증액
5000 지역 개발 비			11,585,609	25,000		11,560,609	
5100 도시 개발 비			2,421,834	25,000		2,396,834	
	5120	주택 사업	1,803,055	25,000		1,778,055	
		5124 주택개량	1,802,200	25,000		1,777,200	백오아파트 보수 비 불요

2. 특별회계 세출 :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제출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상수도 특별회계			67,000	67,000	.	67,000	
사업 비	사업 비	상수도 사업	50,000	50,000	.	6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상수도 구배 수지 절거 및 체육 공원 조성 불요 . 전기승압 및 모터 증설(월정상수도) 불요 . 평창상수도 고속 응집 침전기 설치
			17,000	17,000	.		
			.	.	67,000		

94, 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177
----------	-----

제안년월일 : 94. 7.

제안자 : 평창군



이 267

1. 제안사유

2000년대 고원도시 개발 기반조성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현청사 건물협소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암면 청사신축비 일부를 지방채 차입을하여 어려운 군재정난을 다소 해소코자 의결을 요구함.

2. 주요골자

지방채 차입계획

< 일반회계 >

- 사업명 : 도암면 청사 신축
- 기채규모 : 삼억원 (300,000,000원)
- 기채선 : 지방재정 공제기금
- 기채종류 : 중서차입
- 발행시기 : 94.
- 이율 : 년 3%
- 상환기간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군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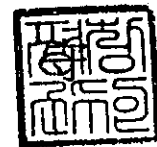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위 경우 내부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地方債發行 承認申請書(證書借入債)

1. 事業名 : 道岩面廳舍新築
2. 承認申請額 : 參億圓 (₩300,000,000)
3. 借入先 : 韓國地方財政共濟會
4. 資金種類 : 地方財政共濟基金
5. 利率 : 年 3%
6. 發行時期 : 1994. 3.
7. 償還方法 : 2年据置 10年均等償還
8. 償還財源 : 郡一般會計支援 及 其他經費
9. 會計名 : 一般會計
10. 事業計劃書 : 別添
11. 地方債償還計劃 : "
12. 債務現況 : "
13. 可用財源現況 : "
14. 誓約書 : "

平 昌 郡



事 業 計 劃 書

1. 事業名 : 道岩面事務所廳舍新築

2. 事業目的 及び 必要性

- 老朽施設不備 且 敷地狹小로 勤務環境 劣惡
- 數年來 建議된 住民宿願 事業解決
- 2千年代 高原都市 開發 基盤造成

3. 推進經緯

- ○ '90 面 繁榮會 建議等 新築 必要性 擡頭
- '91 移轉新築計劃 長期開發 構想事業으로 郡 議會 報告
- '92 知事, 郡守, 住民 會同時 地域住民 建議 事項
- '93 新築基本計劃案 立案 且 敷地 確定

4. 事業概要

- 期 間 : '94. 3. ——— 95. 12. (2 個年)
- 位 置 : 平昌郡 道岩面 橫溪里 335番地 - 圖
- 內 譯

(單位: 百萬圓)

工種別	事業量	事業費 合計	既投資	今 回 計 劃						今 後 計 劃
				計	地方債	國費	地 方 費			
							市道	市郡區	其他	
計		1,622		1,323	300	-	-	1,023		299
土 工 費	2,193 ㎡	190	-	190	-	-	-	190	-	-
建 築 費	1,988 ㎡	1,337	-	1,038	300	-	-	738	-	299
設 計 費	1 식	85	-	85	-	-	-	85	-	-
撤 去 費	2 등	10	-	10	-	-	-	10	-	-
기 타	-	-	-	-	-	-	-	-	-	-

· 年度別 投資計劃

(單位：百萬圓)

工 種 別	合 計		既 投 資		今 回 計 劃		今 後 計 劃	
	物 量	事 業 費	物 量	事 業 費	物 量	事 業 費	物 量	事 業 費
計		1,622	-	-	-	1,323	-	299
'94		529	-	-	-	529	-	-
건물철거	2 동	10	-	-	2 동	10	-	-
부지조성	2,193 m'	190	-	-	2,193 m'	190	-	-
설계용역	1 식	85	-	-	1 식	85	-	-
기초공사	1 식	244	-	-	1 식	244	-	-
'95		794	-	-	-	794	-	-
건축공사	1,988 m'	635	-	-	1,988 m'	635	-	-
설비 및 부대공사	1 식	159	-	-	1 식	159	-	-
'96		299	-	-	-	-	-	299
창고 소방차고 부대시설 공사	495m'	299	-	-	-	-	-	299

· 年度別 · 財源別 投資計劃

(單位：百萬圓)

財 源 別	合 計	既 投 資	今 回 計 劃	今 後 計 劃
計	1,622	-	1,323	299
'94	529	-	529	-
地方債	210	-	210	-
郡 費	319	-	319	-
'95	794	-	794	-
地方債	90	-	90	-
郡 費	704	-	704	-
'96	299	-	-	299
地方債		-	-	-
郡 費	299	-	-	299

5. 事業推進에 따른 期待效果

- 집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근무의욕 고취
- 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주민 불만해소
- 2천년대 고원도시 개발 기반구축

6. 事業의 妥當性 分析

- 各種 政府計劃 및 地域計劃과의 關聯性 檢討
 - '99년 동계아시안 게임등 동계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배후 도시 개발 기반 조성상 필요.
- 事業推進에 관한 住民輿論
 - 수년전부터의 주민 숙원사업 으로서 조기 착공하여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음.
- 各種 認許可 事項
 - 토지 형질 변경 허가
 - 도시계획 변경 허가
 - 건축허가
- 問題點 및 對策
 - 확장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도로)저축.
 - 도시계획 변경으로 저축도로 폐지 또는 이설.

地方債償還計劃

(單位：百萬圓)

區分	償還計劃			償還財源						
	計	元金	利子	計	市郡區費	市道費	事業收入	實需要者負擔金	國費	其他
計	367.5	300	67.5	367.5	367.5					
'94	-	-	-	-	-					
'95	9	-	9	9	9					
'96	9	-	9	9	9					
'97	39	30	9	39	39					
'98	38.1	30	8.1	38.1	38.1					
'99	37.2	30	7.2	37.2	37.2					
2000	36.3	30	6.3	36.3	36.3					
2001	35.4	30	5.4	35.4	35.4					
2002	34.5	30	4.5	34.5	34.5					
2003	33.6	30	3.6	33.6	33.6					
2004	32.7	30	2.7	32.7	32.7					
2005	31.8	30	1.8	31.8	31.8					
2006	30.9	30	0.9	30.9	30.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其他內譯音具體的으로記載

誓 約 書

平 昌 郡 守는 '94道岩面廳舍新築地方債 事業을 實施함에 있어서 다음 事項을 履行할 것을 誓約합니다.

다 음

1. 地方債事業은 承認된 範圍內에서 모든 事項을 確實히 實踐하고 創意力을 發揮하여 最大限 地域開發에 利益이 되도록 地方債事業을 施行하며 目的外에 執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
2. 地方債資金은 地方債發行 承認條件에 따라 健全하게 管理하고 債務償還은 償還計劃에 따라 期間內에 金額을 償還하겠습.
3. 本人이 離職한 境遇에도 地方債事業遂行에 관하여 發生되는 모든 責任을 지겠습.

1994年 1 월 일

平 昌 郡 守



內務部長官 貴下

平昌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178
----------	-----

提案年月日：1994年 7月 日

發議者：李致玉議員 外 6 人

1. 提案理由

地方自治法이 改正('94. 3. 16)되고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改正 ('94.7.6大統領令 第14,317號) 公布됨에 따라 平昌郡議會議員의 日費 및 旅費支給額을 現實에 맞게 上向 調整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平昌郡議會議員의 日費를 現行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調整함 (案 第6條)

나. 公務員旅費規定이 改正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平昌郡議會 議員의 國,內外 旅費에 關한 事項을 調整함 (案 別표1및別표2)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숙박비란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식비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90	나등급 78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가등급 114	가등급 81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4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관련)

(단 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운임의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한다.</p>	<p>제6조(일비지급기준) ----- ----- 50,000원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p>[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 차 운임</th> <th>현 지 교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 비 (1일당)</th> <th>식탁료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장 부의장</td> <td rowspan="2">1 등급</td> <td rowspan="2">2등 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갑지 5,000</td> <td>갑지 17,000</td> <td>갑지 11,000</td> <td rowspan="2">800</td> </tr> <tr> <td>을지 4,500</td> <td>을지 15,000</td> <td>을지 9,500</td> </tr> <tr> <td rowspan="2">의원</td> <td rowspan="2">2 등급</td> <td rowspan="2">2등 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갑지 4,500</td> <td>갑지 14,000</td> <td>갑지 10,500</td> <td rowspan="2">800</td> </tr> <tr> <td>을지 4,000</td> <td>을지 11,500</td> <td>을지 9,000</td> </tr> </tbody> </table> <p>비 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의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갑지 17,000	갑지 11,000	800	을지 4,500	을지 15,000	을지 9,500	의원	2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4,500	갑지 14,000	갑지 10,500	800	을지 4,000	을지 11,500	을지 9,000	<p>[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 차 운임</th> <th>현 지 교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 비 (1일당)</th> <th>식탁료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장 부의장</td> <td rowspan="2">1 등급</td> <td rowspan="2">2등 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td> <td></td> <td></td> <td rowspan="2">800</td> </tr> <tr> <td>6,500</td> <td>20,700</td> <td>11,000</td> </tr> <tr> <td rowspan="2">의원</td> <td rowspan="2">2 등급</td> <td rowspan="2">2등 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 rowspan="2">정액</td> <td></td> <td></td> <td></td> <td rowspan="2">800</td> </tr> <tr> <td>6,500</td> <td>16,200</td> <td>10,500</td> </tr> </tbody> </table> <p>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800	6,500	20,700	11,000	의원	2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800	6,500	16,200	10,5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갑지 17,000	갑지 11,000	800																																																											
					을지 4,500	을지 15,000	을지 9,500																																																												
의원	2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4,500	갑지 14,000	갑지 10,500	800																																																											
					을지 4,000	을지 11,500	을지 9,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800																																																											
					6,500	20,700	11,000																																																												
의원	2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800																																																											
					6,500	16,200	10,500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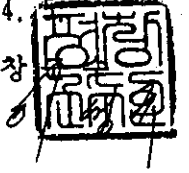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 별표 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2항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비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숙 박 비</th> <th style="width: 35%;">식 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left;">의 장 부 의 장</td> <td>가 등 급 100</td> <td>가 등 급 53</td> </tr> <tr> <td>나 등 급 79</td> <td>나 등 급 46</td> </tr> <tr> <td>다 등 급 60</td> <td>다 등 급 40</td> </tr> <tr> <td>라 등 급 40</td> <td>라 등 급 33</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left;">의 원</td> <td>가 등 급 83</td> <td>가 등 급 48</td> </tr> <tr> <td>나 등 급 66</td> <td>나 등 급 42</td> </tr> <tr> <td>다 등 급 50</td> <td>다 등 급 36</td> </tr> <tr> <td>라 등 급 33</td> <td>라 등 급 30</td> </tr> </tbody> </table>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 장 부 의 장	가 등 급 100	가 등 급 53	나 등 급 79	나 등 급 46	다 등 급 60	다 등 급 40	라 등 급 40	라 등 급 33	의 원	가 등 급 83	가 등 급 48	나 등 급 66	나 등 급 42	다 등 급 50	다 등 급 36	라 등 급 33	라 등 급 30	<p>【 별표 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2항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비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숙 박 비</th> <th style="width: 35%;">식 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left;">의 장 부 의 장</td> <td>가 등 급 130</td> <td>가 등 급 107</td> </tr> <tr> <td>나 등 급 90</td> <td>나 등 급 78</td> </tr> <tr> <td>다 등 급 72</td> <td>다 등 급 58</td> </tr> <tr> <td>라 등 급 62</td> <td>라 등 급 49</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left;">의 원</td> <td>가 등 급 114</td> <td>가 등 급 81</td> </tr> <tr> <td>나 등 급 74</td> <td>나 등 급 59</td> </tr> <tr> <td>다 등 급 55</td> <td>다 등 급 44</td> </tr> <tr> <td>라 등 급 46</td> <td>라 등 급 37</td> </tr> </tbody> </table>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 장 부 의 장	가 등 급 130	가 등 급 107	나 등 급 90	나 등 급 78	다 등 급 72	다 등 급 58	라 등 급 62	라 등 급 49	의 원	가 등 급 114	가 등 급 81	나 등 급 74	나 등 급 59	다 등 급 55	다 등 급 44	라 등 급 46	라 등 급 37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 장 부 의 장	가 등 급 100	가 등 급 53																																									
	나 등 급 79	나 등 급 46																																									
	다 등 급 60	다 등 급 40																																									
	라 등 급 40	라 등 급 33																																									
의 원	가 등 급 83	가 등 급 48																																									
	나 등 급 66	나 등 급 42																																									
	다 등 급 50	다 등 급 36																																									
	라 등 급 33	라 등 급 30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 장 부 의 장	가 등 급 130	가 등 급 107																																									
	나 등 급 90	나 등 급 78																																									
	다 등 급 72	다 등 급 58																																									
	라 등 급 62	라 등 급 49																																									
의 원	가 등 급 114	가 등 급 81																																									
	나 등 급 74	나 등 급 59																																									
	다 등 급 55	다 등 급 44																																									
	라 등 급 46	라 등 급 3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
번호	192

제출연월일 : 1994.

제 출 자 : 평 창



1. 제안이유

공무원의 私的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在外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在外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在外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 나.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私的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
-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公暇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2조 제4호)
-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 마.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병가 연2월을 60일로, 공무원 병가 연6월을 180일로 각각 개정함(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제2항 본문중 "연 6월"을 "연 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파견근무) ①(생략) 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파견근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음도표 생략) ②(생략)</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p> <p>(다음도표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 ④(생략)</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p> <p>1. ~ 2.(생략)</p>	<p>제21조(병가) ①----- ----- 연 60일 -----.</p> <p>1. ~ 2.(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u>연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u>	제21조(병가) ①	----- ----- ----- 연 180일의 -----		
③(생략)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	제22조(공가)	----- -----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		
1. ~ 3.(생략)	(신설)	1. ~ 3.(현행과 같음)			
4.(생략)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5.(현행 제4호와 같음)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7
	자녀	1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형제, 자매	1			1
회갑~출산(생략)			회갑~출산(현행과 같음)		
사망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자녀	3			3
	형제, 자매	3			3
백·숙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상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형제, 자매	1			1

관 계 법 령 발 취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983· 4· 16]
조례 제854호 전문개정

개정	1985· 10· 31	조례 제 100호
	1988· 1· 7	조례 제1089호
	1988· 10· 13	조례 제1135호
	1989· 2· 14	조례 제1176호
	1989· 4· 25	조례 제1194호
	1989· 8· 21	조례 제1212호
	1993· 4· 16	조례 제14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근 무 시 간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89·8·21>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군수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휴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8 일
2년이상 3년미만	11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5년이상	20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연가 일수예의 산입)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근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폐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3·4·16>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국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

하고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u>선 서 문</u></p> <p style="margin: 10px 0 0 0;">선 서</p> <p style="margin: 10px 0 0 0;">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료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형제, 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3
	형제, 자매	3
	백, 숙부모	3
탈 상	배 우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형제, 자매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복무규정 (1981·5·18)
(대통령령제10312호)

개정 1984·8·2 대통령령제11480호
 1990·6·8 대통령령제13018호
 1991·3·18 대통령령제13328호(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
2.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한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주재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국가공무원

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 (품위유지) ①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법의 준수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친절·공정등) ①재외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영리활동금지등)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실태보고) ①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에 소속 재외공무원(이하 “공관원”이라 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는 외무부장관은 주재관 및 주재무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의 사본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외무부장관(주재관 또는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은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당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8·2)

제13조 (소환등) ①공관장은 공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외공무원의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부훈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외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을 소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4·8·2>

③외무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관계부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인계·인수) ①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외무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공관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 (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 (일시귀국)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이 배우자 이외의 동반가족을 일시귀국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 2 항의 허가를 한 공관장은 이를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부처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주재관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주재국 이외의 여행) ①공관장이 주재국 이외의 제 3 국에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관원이 주재국 이외의 제 3 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적용한다.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의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6·8, 91·3·18>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3·18>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173
--------	--------	-----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일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업무중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처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3천300㎡ 이하의 농지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의 (별표) 중 일련번호란 "37" 다음에 38란 내지 4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천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서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1990. 8. 17 / 농림수산부훈령제713호>

개정 농림수산부훈령제745호('92.2.28)
 농림수산부훈령제772호('93.8.18)
 농림수산부훈령제783호('94.3.28)
 농림수산부훈령제784호('94.4.30)(전문개정)

제15조(사무위임) 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면장에게 사무위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 제3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천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2. 특조법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3. 특조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②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할 수 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76.4.21 / 대통령령제8094호전문개정)

개정 1982. 9. 18 대통령령제10916호
 1982. 12. 11 대통령령제10955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3. 5. 30 대통령령제11137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8. 9. 24 대통령령제12521호
 1989. 7. 21 대통령령제12761호
 1990. 6. 26 대통령령제13030호(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1990. 8. 8 대통령령제13063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1991. 4. 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 9. 7 대통령령제1346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2. 2. 22 대통령령제13597호
 1994. 4. 9 대통령령제14,205호

제3조의2(농지의 일시전용허가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목적사업에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1.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2. 농지개발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 묘석이나 광물채굴 및 물건의 지하 매설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민간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1990·4·7)
法律第428號

改正	1991·5·31	法律第4377號
	1991·11·22	法律第4400號
	1991·12·14	法律第4419號(消防法)
	1991·12·14	法律第4429號(水道法)
	1993·6·11	法律第4552號
	1993·6·11	法律第4556號(林業協同組合法)
	1993·8·5	法律第4572號(國土利用管理法)
	1993·12·31	法律第4675號(國價法)
	1993·12·31	法律第4690號(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第47條(農地轉用과 이용의 特例)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 同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任意轉用事項,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 同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同意·승인사항 또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事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第2項 및 第5條第1項과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에 規定된 節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改正 93·6·11 法4552>

1.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農家住宅·農業用施設의 設置.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農漁民의 共同生活의 편익을 위한 施設의 設置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農水産關聯 研究施設과 養漁場·養殖場등 漁業用 施設의 設置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中小企業의 工場의 增設. 이 경우 法 第45條 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과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을 納入하여야 한다.

②農地에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多年性植物 또는 觀賞樹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栽培하거나 植栽할 수 있다. 다만, 觀賞樹를 栽培하거나 植栽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關한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協議·同意·승인 또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轉用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과 第4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이하 "農地造成費등"이라 한다)의 賦課가 감면되는 施設의 用地로 轉用된 土地를 農地造成費등의 감면비율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상응하는 農地造成費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3·6·11 法455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0.8.3)
대통령령제13063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 7. 3	대통령령제13430호
	1991. 9. 26	대통령령제13480호(제기물관리법시행령)
	1992. 2. 22	대통령령제13596호
	1992. 5. 30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1992. 12. 24	대통령령제13785호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12. 14	대통령령제140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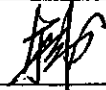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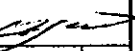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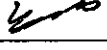

제57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7.3, 92.2.22, 93.12.14>

1.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2.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진흥지역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제곱미터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집하장·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4.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5.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농산물건조시설·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
6.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7.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7천제곱미터이하의 농수산물관련연구시설의 설치
8.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의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증설

교 육 부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720-3403) / 전송(736-3402) / 담당 이 영 복

문서번호 사진 81720-51
 시행일자 1994. 6. 15 (년)
 (경유)
 수 신 평창군 의회의장
 참 조

선결	의장		지시		
접	일자 시간	1994. 6. 17.	결재·공 람	부의장	
수	번호	68		과장	
	처리과			계장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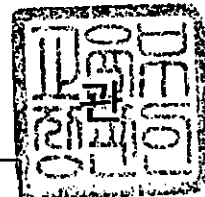
제 목 진부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관한 건의건

정승원 

1. 평의회 제47호('94. 6. 4)호와 관련입니다.
2. 평창군민의 정서함양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에 진력하시는 귀 의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3. 우리부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의회에서 건의한 평창군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의회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조속히 건립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

교 육 부 장

사회교육진흥과장 전결



국민의 뜻 평화로 국민의 힘 통일로
문 화 체 육 부

우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 722-9181 / 전송 737-7357

문서번호 도정 86640-133
 시행일자 1994.07.18.
 (경유)
 수신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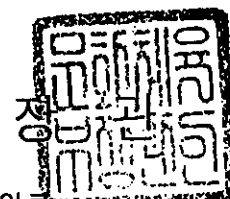
선결	의상		지시	
접	일자 시간	94.7.22	결	부의장
수	번호	93	재·공	과장
처리과	의회사무과		람	계장
담당자	김인국			

제목 진부도서관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회신

정몽규인도

1. 평의회 제47호('94.6.4)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지역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매년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기준은 군·읍단위 행정구역내에 공공도서관 미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되 1군 1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귀 군에는 '91년도에 평창군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20백만원을 기 지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신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국고보조 교부를 신청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 화 체 육 부



국민의 뜻 평화로 국민의 힘 통일로

평 창 군

232 - 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전화 30 - 2211 (0374) / 담당 여 운 기

문서번호 기획 13700 - 471

시행일자 1994. 7. 25 (년)

발음 평창군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선결	의장		지시		
접	일자 시간	94. 7. 25		결	부의장
수	번호	95	재		과장
처리과	의회사무과			공	계장
담당자	한이영		람		

제목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처리의견 통보

평의회 제49호(94. 6. 14)호에 의거 제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 및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처리의견 및 계획 1부. 끝.

평 창 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평 창 군

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평창읍	평창종합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및시설물관리를 위한 특별 대책이 요구됨. - 조경, 인도등 잡초 및 훼손부분 보완 - 관리자 미상근으로 시설물 관리 소홀 ○ 우기대비 주변농경지에 대한 매몰및 침수 방지대책 수립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전담관리인 1인을 상주배치하여 시설물보수 주변정비등을 수시 관리해오고 있음. ○ 전담관리인 근무강화 각종행사시 순찰을 강화하여 시설물 훼손을 사전에 방지 ○ 운동장 진입로변 가옥 및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에 사업비 10,000천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설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사업기간 : 7. 1 ~ 7. 31)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평창읍	평창군종합문화 예술회관	○ 소요사업비 확보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시행	<p>【 재원별 예산확보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6,400백만원 . 투자계획 ; 6,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3,400 군비 2,500 문예기금 500 ○ 기확보예산 : 1,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1,00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 ○ 향후예산대책 : 5,1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2,400 군비 2,200 문예기금 500 ○ 년차별 국도비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6,400백만원 . 재 원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3,400 문예기금 500 . '95이후 지원신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2,400 문예기금 500 ○ 군비 확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소요액 : 2,500 . 확 보 액 : 300 . '95이후 소요액 : 2,200 . 향후계획 ('95 ~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비 사용승인 신청 으로 안정적 예산확보책 강구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밀한 사업검토로 사업계획 변경요인 사전제거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시행기간, 사업규모 예산확보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94. 4. 15 ○ 사업규모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입찰 시행으로 확정된 계획에 의거 회관 건립 ○ 예산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국·도비 지원신청 : 2,900 백만원 - 군비확보책 : '95이후 계속비사용 승인 신청 (2,000백만원)
	임하교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 우기로인한 수해피해 예방대책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추경시 부족예산 110백만원 반영 ○ '94당초발주분 상판8경간 우기전완공으로 수해피해예방
	후평-계장간 농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노면 노후로 통행불편 보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추경시 도로노면 보수비 계상 : 10,000천원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연차적 확포장계획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평창읍	평창상수도시설 확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지 성토법면 균열로 우기시 붕괴 위험 내재 사전 방지대책 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말 준공으로 성토부분 침하 발생 ○ 배수지에 비닐비축 우기시 비닐피복, 사고예방 ○ 비닐비축 : '94. 6. 5
	평창군위생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용수확보 대책수립 추진 - 예비용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처리장부근은 석회암 지역 으로 인근에서는 지하수개발 및 지표수의 확보가 곤란하고, 지하수에 함유된 이물질인 석회가루가 있어 상주가족 및 직원들의 식수 및 생활 용수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업용수로서 도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중 1가지 방법을 검토, 선정하여 예비 용수를 확보할 계획임 평창강 (상리교인접) 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용수를 유입사용 - 예산소요액 : 120,000천원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읍 이곡리(삼거리)에서 지하수개발 용수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소요액 : 70,000천원 · 현 위치부근에서 지하수 개발용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소요액 : 30,000천원
	평창농공단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파악 지원 방안강구 〈문제점〉 ○ 기능인력 및 공업용수 확보 지남 ○ 회원업체 미가동으로 가동업체 피해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과다지출로 원가상승 요인 ○ 근로자 아파트 미완공으로 인한 무주택 근로자 입주 불능, 조기완공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납부방법의 개선 → 가동업체 위주로 - 협의회 정기회의 정례화 및 건설한 중소기업 선별유치 ○ 공공시설개선 및 보수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APT진입로 포장 : L=340m, B=4m 200백만원 - 상수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관이설 : L = 30m, 1.5백만원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평창읍	평창시가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영진상회부지 미활용으로 주민불만 대두 ○ 주차장 이용으로 교통장애 초래, 조속 재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사업계획은 하리파출소앞 전부분을 포함하여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이역대 평창군 번영회장 및 이정선 자율방범대장의 다수 주민들이 군수께 건의하여 현 상태로 시공된바 현지 주민들의 의견 및 현지 상황을 충분히 답사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천변리강변주차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및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시설을 위한 위치로 적합 적극 검토 추진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설계중이며 '94년하반기 무료노외주차장으로 완공할 계획임 ○ 주차장 설치시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판매장은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없는 내용으로 5일마다 혼잡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주차장을 이용토록 행정지도 실시

면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평창읍	평창강 하상정비	○ 고수부지 및 자생 버드나무로 인한 재해우려 조기정비 필요	○ '94. 4. 15 ~ 4. 21 일주일간 하상정리실시로 800평의 버드나무를 정비하였음
	상리교 가설공사	○ 발주지연으로 우기시 수해피해예상, 시행 전 피해방지 대책 수립 추진 필요	○ 공사총액 1억 2천만원중 5천만원 계정으로 7천만원 사업비 부족 사업시행전 부실공사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 특별교육 및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 차후예산 편성시 부족 사업비 예산반영 계획임
미탄면	미탄복지회관운영	○ 시설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주민이용 불편,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미흡 ○ 목욕탕시설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진단, 쾌적한 이용시설로 개선 필요	○ '95목욕탕시설등 전반적인 보수계획 수립 추진 - '95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미탄면	평안1리 굴골농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선정시 사업 효과 판단 미흡으로 예산운영 부적정초래 ※ 실경작 1,000여평으로 확인 ○ 세천에 설치한 토관 (직경1m)협소로 수해 유발 우려 → 박스설치가 타당 - 토관 양쪽부분 축대 등 마감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조사결과 농경지가 약 62,000평 정도로 농산물 수송원활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기존도로 하류에 설치된 흙관 규격과 동일하게 시공 (Ø 1,000 m/m) ○ 흙관 날개벽 석축시공으로 토사유출 방지 계획임
	미탄상수도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량 과다발생으로 취·송수모터 24시간 가동 - 관로교체 등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급수시설관로 사용구간의 급수관 불력별 교체실시 ○ '94. 1회추경예산반영 : 50백만원 ○ 측량설계 : '94. 7. 20 ○ 공사기간 : '94. 8 ~ '94. 10 ○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의 누수 방지계획 반영, 연차별 추진 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미탄면	회동리 농로포장 (창3리 왕바위골)	○ 난간 미설치로 사고 유발 우려, 보완이 요구됨	○ '94 미탄면 시행공사로 면장 에게 지시 현지확인후 사업타 당성 검토후 '95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음
	마하리 농로포장	○ 배수로 설치 부적정 으로 차량소통 지난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 - 토관등 설치로 요철 마감이 필요 ⇒ 현재 U자형배수로임	○ 당초 흙관을 설치 시공코자 하였으나 인근 토지주의 반발 로 미시공 ○ 철근 구조물 설치로 차량통행 이 원활하도록 조치 하였음
	영월댐 건설과 관련사항	○ 영월댐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피해의식 이 팽배 관불신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대한 주민홍보 시급 (지역개발 제외에 대 한 피해 거론)	○ 영월댐 건설은 건설부 주관으 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실시 설계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투기등의 억제를위하여 도면 및 자료공개가 불가하다 는 건설부의 의견임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미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결정여부, 착공시기, 수몰지역 등 주민이 이해되도록 실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4. 2건설부주관 설명회를 정선군에서 개최할 때 미탄면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참석한바 있으며, '93. 11.17 땀건설계획안을 미탄면장에게 송부하여 홍보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건설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홍보 계획임
	도수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서천경지정리 지구 도수로 미정비로 용수공급 지난, 이의대책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확인후 예산반영 계획
	균도낙석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탄-기화간 터널 잦은 낙석으로 사고 위험내재, 조속한 낙석방지 시설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94.4.12 일우공영(주) 과 계약, '94. 5. 26 준공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방림면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방림4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새로운 작목 개발 보급이 요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림4리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중현재의작목입식은양채류등 7종의다양한작목입식으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기반설비를하였으며 '94년 사업 시행초기에 작목입식엔 다소미흡한 점이 있음 ○ 향후지도기관의 전담지도사 배치, 다양한 작목선정을 협의 입식할 계획이며(토마토양채류등)고품질의 채소류 생산에 주력할 계획임
	계촌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탕시설 (욕조설치, 기구 등) 불합리 이용 주민불편, 개선이 요구됨 ○ 주민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활성화 대책 강구등 운영방안개선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수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자체처리 하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에서 별도계획 수립 추진할 계획임 ○ 농촌지역인구 감소로 인하여 결혼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하여 복지회관을 학교 졸업식, 민방위, 영농교육장, 반상회, 간담회등 주민행사시 이용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방림면	계촌교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전 시공으로 수해피해예방 및 피해대책 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촌교 상판 3경간 '94.6.3 콘크리트타설 완료 ○ '94.6.30까지 거푸집 해체완료로 수해피해 우려없음
	계촌1교 교량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명주가 분리설치되어 충격시 추락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열방지를 위한 시공이음관계로 난관과 분리시공되었음 ○ 교량하부와 철근으로 연결시공으로 교명주 분리 위협이 없음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대화면	하안미-가평-백옥 포간군도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행자 및 시공자의 특별대책 마련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내 시공 및 주변민원 방지 철저 ○ 하안미 지역군도 진입로(시멘트포장)는 주민이용도를 고려, 선시공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폭협소 및 노면과 다 훼손 ○ 재원절감차원에서 편입용지 매입후 년차 시공검토가 바람직 ○ 년차사업으로 전체 설계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된 이월시공으로 단일업체 특혜 부여 계기가 되고 부실시공이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자 특별교육 및 공사감독자 수시 감독 (1일 1회이상) ○ 기존콘크리트포장도 전체군도 포장율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는 개량포장이 어려운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도재정비계획 수립시 계획에 반영 년차별 투자 계획(지방도승격 건의노선) ○ 편입용지의 매입을 위하여는 군도노선 전체 설계후 분할 측량에 의거 매입하여야 하나 노선전체 설계비(군비)가 일시에 과다하게 필요하여 군비재원 조달이 어려움 ○ 이월시공은 절대공기부족 및 주민 기공승락 불응등의 어려움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이월시 중복시공등의 어려움이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며 단일업체 특혜 및 부실시공 우려없음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봉평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 지원방안 강구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필요 - 연료비 부족, 시설 훼손 보수, 이용비품(드레스등) 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으로 회관당 드레스 1벌씩 구입 지원할 예정이며 관리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자체기금(목욕탕 이용료 등 수입)으로 자체 처리토록 함.
	봉평소도읍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전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행정절차 미숙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야기가 예상(가옥 철거, 도로개설 등) ○ 주민협조에 비해 행정지원이 소극적임,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도시계획이 77년에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변경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봉평시가지 고시당시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며 ○ '93년 소도읍정비사업을 시작할때만해도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전혀 제기된 바 없었으나 사업시작후 근래에 일부 주민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문제가 소도읍정비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임

면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 - 도비지원요구 6억원에 대하여 2억2천 확보 ○ 철거 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택신축의 장애요인인 도로 구거등 용도폐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용도폐지 신청중에 있음('94년 6필지) ○ 도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음 '95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계획임 ○ 철거후 이주대책이 없는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은 현재 관련부서와 검토중임
	휘닉스파크개발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닉스파크 개발과 관련 봉평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한 대책 수립추진 시급 - 미온적인 대응태세로 지역주민의 관불신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발에 소요되는 인부는 지역주민을 고용토록하고 ○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시 업체에서 소요되는 농축산물등은 지역(군포는도)내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사용토록함은 물론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p>※ 숙박시설, 민박가구 육성, 주차시설, 특 산물판매시설 및 물 품수급방안 등 시설 계획수립 추진</p> <p>○ 동 개발과 관련된 봉평시가지 우회도로 조기추진</p>	<p>○ 부대시설중 임대업장에 대하 여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 을주고 종사원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업체와 협의는 물론 행정지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음</p> <p>○ 또한 인근 참여할 수 있는 농 가들로하여 농촌 민박 및 관 광농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p> <p>○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진 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후 보유 차량수 등의 여건을 검토한후 노상이나 노 외 주차장을 확충 원활한 교 통 소통대책을 강구할 것임</p> <p>○ 시가지 우회도로는 교통량, 이용객 등을 조사하여 국토 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시행하 고 있는 실정임</p> <p>○ 사업시행청인 국토관리청 원 주지청에 사업시행 건의등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 음</p>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내 방류 오수처리시설 완벽시공 지도 ○ 인근관광지와 연계 지역발전방안 강구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장, 이승복기념관, 오대산국립공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설이용시 발생하는 오수 3,637m³/일(폐기물처리포함)을 3차처리로 BOD4mg/ℓ, ABS 0.5mg/ℓ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평창강 수질1등급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생활오수(300m³/일)를 재처리하여 중수도로 활용할 계획임 ○ 따라서 본시설 사업기간인 '94. 4 ~ '96. 10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완벽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관내 용평리조트, 오대산국립공원, 이승복기념관등 기존관광지의 연간 이용객 수는 약 2,000천명으로 휘닉스파크리조트와 청소년 수련장이 완공될 경우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용평면			<p>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3,000천명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종합건설계획 및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관광거점 도시 개발과 접근체계(각종 도로)정비계획이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지역개발 참여 희망업체에 대하여는 가능한 행정지원 등을 최대한 제공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으며, ○ 또한 해당업체(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리조트)에서 관내 주요 관광자원을 경유 순회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과 관련 인근 주민 피해예방 대책 수립 시행(시공감독, 토사유출 및 흙탕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감독면에 있어서는 매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건축, 산림, 토목등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지도 감독하고 있음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봉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닉스파크 리조트의 경우 토사 유출방지를 위하여 공사로 인한 전범면에 보호망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침수 및 물길 방지를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설치(침사지 3개소 설치, 추후3~4개소 추가설치 예정) ○ 침사지로부터 토사가 회석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시 준설 지시 ○ 과도한 지형변화 및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절,성토시 일시대량 공사지양 ○ 식수원 오염이 없도록 완벽한 정화 시설운영 및 필요시 지하수 자체 개발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매월 1회이상 정기지도 점검 과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면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 풍치림, 마을 운치림에 대한 방제대책 수립추진시급 (회생불가)	○ '94. 6. 22(산림52131-827)기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지시 하였으며 ○ '94. 7. 4부터 우리군 일원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수단 주사 실시
	가산공원조성사업	○ 생가터와 연계된노후 교량개선으로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 생가터와 연계된 남안교는 1981년 가설된 교량으로 구조상 노후교량이 아니며 일부 국소적 부분의(난간등)정비만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 본 교량과 연계된 농어촌도로 노선정비시 교량보수등 검토 하겠음
	비지정관광지관리	○ 오염방지를 위한관리 및 이용시설운영강화 필요	○ 현재 비지정관광지(5개읍면 16개소)에는 117개시설물(매표소 19동, 간이화장실35동, 안내판40개, 경고판18개, 가로등4동, 음수대1식)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면의 경우 흥정계곡과 유포지구(금당계곡)등 2개소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고 있는 바 편의시설물로는 매표소 2동과 간이화장실 5동, 안내판4개, 경고판2개가 설치되어 있음 ○ '94년에는 관내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총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화장실5동, 경고판 9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나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확충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 right;">('94봉평면 설치시설 : 화장실 5동중 2동)</p>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봉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및 화장실 관리 철저로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청소실시 : 주3회 - 관리자교육실시 ○ 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전개 - 수수료 징수시 쓰레기 수거 봉투등을 배부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
	쓰레기 매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당초예산 반영토록 검토 하겠음.
	보래령도로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도로개설을 위한 대책 수립 추진이 요망됨 - 지역주민의 누차 건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래령도로개설은 창동리 - 보래령- 홍천내면에 걸쳐 국도승격건의 노선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음 ○ 국도승격이 불가시 홍천군과 개설계획 협의 군도노선으로 추진계획
용평면	용평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됨 - 혼인적령자 감소로 이용실적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결혼대상자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군수서한문 발송으로 이용률을 제고 코자 함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용평면	용평상수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보급율을확대 (현11%)할 수 있는 방안강구 ○ 기존간이상수도 처리 문제 면밀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 시행 ○ 상수도 수질관리부실 주민여론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관리체제 확립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관 확장사업추진으로 급수해택 부여 - 0.5m 20백만원 ○ 상수도 사용홍보 및 접객업소 우선 상수도 시설토록 지도 ○ 상수도 사용인구가 적어 관내 부 수돗물정체로 녹물등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말 퇴수변 설치 주기적 퇴수조치
	장평-도사간입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대비 사태방지 대책 수립 추진 ○ 토사방지 초근류 보완식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방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리 책임자지정 운영 - 산사태복구자재 사전확보 비축 - 비상연락망 구축 ○ 토사방지 초근류 식재는 추기 실행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용평면	이목정 농산물 직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소수, 품질관리 부실, 적자발생등의 사유분석개선시급 ○ 양분판매로 관측의식 미흡, 시설운영자 및 군 관계부서 관심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는 휴게소→ 쉬어가는 휴게소로 - 종사원 근무 시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변 판매장으로서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진입이 적어 이용객이 적으므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 특색있는 상품진열로 이용객수 극대화 및 홍보 팸플렛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봉평농협과 협의 추진중에 있음. ○ 관측 활동강화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장 위치 알리기 홍보 - 팸플렛 제작 관광성수기 해당직원들 및 조합원 동원 평창산 한우 쇠고기 우수성 홍보 ○ 관광객이 편안히 쉬었다 살수 있는 장소를 판매장 주변에 설치토록 해당조합에 권장 ○ 종사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도 관광객을 상대로 우수한 평창산 한우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토록 해당조합에 권장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용평면	쓰레기 매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분리수거 적극 시행으로 매립량감소 적극 추진 ○ 쓰레기 감량화 추진 지도 및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분리보관용기 202조, 틀은박스28대가 설치되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94. 7월중 FRP분리 보관용기 13조를 추가 확충하여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쓰레기감량을 위해 매월 반상회보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주민의 인식 전환
	고인들 경지정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마무리 철저로인한 민원 발생방지 ○ 농경지보호 제방시설 우기시 방지대책 마련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공사 시행중 현재488m를 우선시공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769m는 추경예산확보후 마무리 예정 ○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하여 잔여구간 범면에 굽은돌을 적치하였음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용평면	재산-공항간군도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추진 ○ 감독관 상주지도 및 감독철저로 민원발생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자 특별교육 및 감독관의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실시 ○ 주민에로사항 수시접수 검토 처리 계획
	용평메밀가공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을 전제로한 상품생산 및 판매망 확충 등 관계기관의 관심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지역 및 강원생산 메밀을 전량 사용함으로써 상품성의 신용도 증가로 판매량 증대 ○ 향후계획은 농협판매장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추진
	청소년수련장 건설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정비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발전방안 강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부 시행사업으로 주변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주민소득과 연계한 특산품 판매코너, 관리인력고용 등 시행부서에 수시건의 하겠음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진부면	공동퇴비제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비지원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업 계획에 의한 정실시공 지도감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가 톱밥과 축분(계분)으로 톱밥 원료는 현지 조달이 가능하나 계분확보가 어려우므로 본군에도 대단위 양계 단지를 조성하여 현지에서 원료를 확보 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월정상수도취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지연으로 수해 피해 우려, 우기전 준공토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보 설치완료 : '94.6.15 ○ 잔여공정(찰쌓기)의 우기전 마무리 계획임
	거문-하진부간 군도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필요 ○ 양여금 교부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용지 일괄매입 및 총가입찰에 의한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자 특별교육 및 감독관의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실시 ○ 주민애로사항 수시접수 검토 처리 계획 - 노선전체설계시설계비(군비)가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군비 재원조달이 어려움 - '95당초예산에 반영건의 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진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으로 거문리 2반 일부주민 이용 교량 미설치, 조기 설치 요망 	
	<p>송정지구 택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한 마무리 대책 수립 추진 ○ 분양저조에 따른 조기분양 대책 및 홍보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사업, 조공사, 오수처리장등 모든공사는 완료 되었으며 ○ 한전의 전기공급시 서로간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이 진행 되고 있음 ○ 조성된 택지는 현재 약49%가 분양되었으며, 계속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음 ○ 년내 분양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 (홍보, 분양알선 등)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진부면	진부상수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방지대책 수립 추진 - 노후관 교체, 누수 탐사 ○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폐수 투기행위 단속 강화가 요구됨 ○ 배수지 빗물 차단시설 설치 필요 ○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조기포장 필요 ○ 송정택지조성으로 급수 부족예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장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방지사업 추진 - '94년도 도암상수도실시 : 28백만원 ○ 상수원 보호구역 지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 1일 2회이상 순찰 -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제작 설치 : 30EA -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정화 활동 실시 ○ 진부상수도시설 이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 10,000 T/D - 시설년도 : '95 ~ '96 - 소요사업비 : 5,000백만원
	진부고수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피해에 대비한 사전검토로 조기시행이 요망됨 - 반대편 제방 수해 피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부서와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가 원활하게 진전될 전망이며 따라서 협의가 되면 7월중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 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도암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적 저조로 사업목적달성 부실 - 홍보강화로 스스로 찾는 판매장 구축 - 관계기관 관심제고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대관령휴게소 으뜸상품판매점 (10평)의 '93판매액은161백만원 구입액은 139백만원으로 22백만원의 차액소득을 올렸음 ○ '94.6월부터 내고장소식지 「지역특산물」 고정난 게재 및 홍보강화 ○ 판매점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품목취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매점확장을 상부기관에 수차 건의중에 있음
	횡계5리 침수가구 이주(수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시일내 관계 부서간 협의 이주 대책추진 - 부지확보·이주가구 확정등 ○ 영세침수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임대주택건설 추진 등의 방안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주를 위한 연립주택 건립대책 추진 - 규모:4층 1동 26세대 ○ '94. 6월 : 부지확보 완료 ○ '94. 1회추경 : 건축공사비 확보 ○ '94. 7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 '94. 9월 : 건축공사 착공 ○ '95. 6월 : 건축공사 완료 및 입주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도암면	대관령 레포션 센터	○ 공사중단방치로 미관 훼손, 조속공사재개 방안 강구	○ 건축주의 초산으로 인하여 공사중단중에 있으나, 건축주 변경 및 시공자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조속한 기일내 공사 재개 예정임
	횡계진입로정비	○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현재는 '93년 예산 300백만원으로 1차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 중앙으로부터 교부금 수령으로 사업추진에 전력하겠음 ○ '94 2회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완공되도록 할 계획임
	횡계상수도 시설	○ 급수인구증가에따른 급수대책수립 - 배수지확장 (현재1,000톤) ○ 노후관교체 및 누수 탐사실시 필요로 운영비 절감방안 강구가 요구됨	○ " 2000년대를 향한 상수도사업계획 "에 의거 '96~'97년도에 확장(9,000 T/D)계획임 ○ 노후관로 교체의 연차별추진 — '94년도 추진 585m (950백만원)

邑面別	事業名	指 摘 事 項	措 置 計 劃
도암면	병내리 화훼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농가 자을 참여로 추진하나 화훼 자부담능력이 충분한 농가로 선정 추진하여 이미 단지화된 사업으로 타농가 참여는 불가능함 향후계획은 본 단지를 축으로 고냉지 화훼산업을 육성추진할 계획임
	횡계7리 교량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폭이 하폭보다 협소 수해 재피해가 우려됨 ○ 완벽한 공사실시로 수해로 인한 재피해방지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홍수량 및 수리계산 검토하여 교량 시공하였으며 교대 좌우측 석축시공으로 수해피해 사전예방

邑面別	事業名	指摘事項	措置計劃
도암면	횡계고수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높이가 하쪽에 비하여 높음 ○ 유량 예측을 통한 충분한 하폭 확보가 요구됨 ○ 수해에 대비 우기 이전 적극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횡계고수부지는 폭15~20m, 높이 1.8m로 조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을 8.5~16m로 축소하였고 높이는 현지여건(향후 주차장 활용)에 따라 종전대로 시공중이며 바닥전체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였고 ○ 수해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중순이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 (현공정 90%)
	횡계5리 교량가설 (수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이전 마무리 및 주변정리 철저히 수해 방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94. 6. 25 사업장 주변 마무리 완료
	횡계5리 소하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거주변 찰쌓기 미실시로 수해우려 내재 - 보완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거좌우 날개벽 찰쌓기 시공으로 수해피해 사전 예방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1. 관내 국도중 위험지구를 중점진단 종합검토한 자료에 의거 의회차원에서 관계기관을 방문 적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작성 제출요망

□ 국도 위험지구 정비요청 자료

- 국도 31호선 (마지 ~ 유동)
 - . 사업명 : 낙석위험지구 (6개소)
 - . 사업량 : 길이 400m, 폭 5m
 - . 사업비 : 30,000천원
- 국도 31호선 (이목정2리)
 - . 사업명 : 석축붕괴 도로유실
 - . 사업량 : 길이 100m
 - . 사업비 : 10,000천원
- 국도 6호선 (용평면 장평리 ~ 봉평면 창동리)
 - . 사업명 : 국도 확포장 사업
 - . 사업량 : 길이 7,000m
 - . 사업비 : 6,000,000천원
- 지방도 405호선 (진부면 마평1리)
 - . 사업명 : 낙석 방호벽
 - . 사업량 : 길이 300m, 폭 1m
 - . 사업비 : 6,000천원
- 지방도 405호선 (진부면 막동리)
 - . 사업명 : 낙성 방호벽 설치
 - . 사업량 : 길이 100m, 폭 1m
 - . 사업비 : 2,000천원

2. 농촌도로(마을안길, 수해복구등) 설계시 위치별로 시공단가 적용에차이가 많음.

'94사업장별(군 및 읍면)로 설계현황을 분석 제출 요망

도로포장 단가현황

(단위 : 천원, m)

위 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m'당단가	기타 참고 사항	비고
읍면	리		길이	폭				
평창	도돈리	도돈리 진입로포장 공사	340	4.0	26,000	76.47		
미탄	회동2	2권역 마을길 포장 공사	560	4.0	43,486	77.6		
방림	계촌3	"	404	3.5	28,957	72		
대화	상안미 2리	농로포장공사	520	4.0	40,000	76.9		
봉평	원길2	농촌마을길포장공사 (2권역)	640	4.0	50,000	78		
용평	장평2	1권역 농로포장공사	300	4.0	23,200	77.3		
진부	탑동리	농촌마을길포장공사	601	4.0	48,600	80		
도암	차항1	2권역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690	4.0	51,800	75.1		

※ 횡 배수관 및 석축등 구조물 시공관계로 단가 상이함

3. 속사지구 휴게소건축 농지전용허가와 관련 지역주민여론 대두, 이와관련한
경위와 향후대책 제출 요망

□ 휴게소 건축 농지전용허가와 관련 지역주민 여론대두 향후 대책

- 도로법 제27조 및 도로변휴게소관리지침에 의거 휴게소 설치허가
. 소재지 : 용평면 속사리(군도 183호선) 165외 5필지
. 면 적 : 5,340m²
. 피허가자 :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9번지 오 세 원
- 휴게소 설치허가시 관리지침 및 도로법 에 의거 1회민원 방문처리
결과에따라 해당실과에 검토의견을 수렴후 허가를 하였고, 조건에
타법령에 관계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허가 하였음.
- 도로변휴게소 설치허가 조건에 따라 타법령에 의거 인.허가 사항을
득하지 못하면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변 휴게소 설치를 하지 못함

4. 봉평 소도읍정비 국,도비지원 요청현황 및 경위와 관련 문서사본
첨부 제출 요망

- '94 봉평도읍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1부 (별첨)

“비려두민 벼후강원 가꾸면 신강원”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전화 30 - 2252 (0374) / 담당 임광수

문서번호 진흥 13600 - 59-

시행일자 1994. 6. 29.

발음 강원도지사

참조 사회진흥과장

취급	체 송	군 수
보존	3 년	
부군수	전 결	
과 장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	임 광 수 <i>[Handwritten Signature]</i>	개발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협조

제목 '94 봉평도움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진흥 13600 - 671 ('94. 6. 1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의거 '94 봉평도움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조속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부



평 창 군 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평 창 군 수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보조사업 목 적	'94 봉평도움정비사업						
보조사업 소요경비	계	재 원 내 역 (천 원)					보조금(천원)
		소 계	교 부 세	증액 국고	도 비	군 비	교부 신청액
	866,000	866,000	133,000	-	133,000	600,000	266,000
보조사업 기 간	'94. 4. ~ '94. 12.						
<p>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5 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top: 20px;">1994. . . .</p>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1.2em;">신 청 인 : 평 창 군 수</p> <p style="margin-top: 20px;">강원도지사 귀하</p>							
붙임 자료	사업 계획서 1부						

5. 읍면별 시가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체계적인 하수처리
대책마련등의 향후 계획

○ 황계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량 : 3.701km²

. 사업비 : 30,000천원 (용역비 예산확보 : '94. 1회추경)

※ 하수도 기본계획은 읍급 도시 이상만 수립토록 되어있으나
지역발전상을 고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읍면순으로 기본
계획 수립토록 할 것임

주 민 과 의 대 화 결 과

住民과의 對話 結果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평창읍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익개량 및 농가주 택물량 지원 확대 ○ 농촌주택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익 및 주택개량사업량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지원 하고 있으나, 실수요자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점차 물량을 확대지원하고 있음 ○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매년말 대상마을로 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 므로 금년신청시 내년도 사업 으로 지원 가능함
	농산물상설직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상설직판장 개설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평창군 관내 설치계획 은 국도변, 비지정 관광지등 관광객 내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구상 하고 있으나 순수 군비투자 사업으로는 재원마련의 어려 움이 있음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후계자 자금지원 확대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후계자 자금지원은 사업 내용 및 후계자 희망에 따라 15~25백만원까지 구분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자 선정후 3년경과되면 신청에 의하여 전업농어가로 선정하여 50백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영농후계자 자금지원은 앞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임
	평창우회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우회도로 개설에 대비 향동리 진입로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우회도로 개설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조치
	가로변개나리식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개나리 식재, 화단정비시 등 교통 안전 고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다발지역 7개소 1,300m는 군에서 직접 개나리를 낮게 전정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읍·면에서 실시예정임 (6 - 7 월)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중식재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키가 작은 화중을 식재토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농촌도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평-다수간 농촌도로 조기보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추경시 예산계상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 계획에 반영 년차적 추진계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중단으로 와해우려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새마을단체는 '95년에 50%를 지원하고 '96년에 지원을 중단 할 계획임 ○ '96년이후에 새마을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하며 각 단체는 자립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임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미탄면	창리천 수질오염 개선 적극 추진	○ 창리천제방 및 수질 오염 개선 적극 추진	<p>○ '92년 유성건설(주)에서 시공 한 제방중 6m 정도가 붕괴되 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지시</p> <p>○ 창리천의 주요염원은 생활하 수가 83%, 송어양식장8%, 기 타 9%로 분석하고 있음</p> <p>- 따라서 생활하수에 대한처리 와 송어양식장 오염방지 대책이 요구됨</p> <p>< 향후계획 ></p> <p>○ 오수처리장 설치 : '96년</p> <p>○ 송어양식장 방지시설대상확대</p> <p>- 당초 : 1000m²이상:10개소</p> <p>- 확대 : 500m²이상:11개소</p>

邑面別	事 業 名	建 議 要 旨	檢 討 結 果
미탄면	지역특산물판매장	○ 지역특산물판매장 활성화 요망	○ 내방객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장소로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판매장 설치는 가능하나 년중 지속적으로 내방객이 많은 지 역을 우선 선정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검토
방림면	솔잎혹파리피해목 조기벌채	○ 솔잎혹파리 피해목 조기벌채로 자원활용 및 산주소득 도모	○ 예산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벌채 및 갱신 조립하고 있음
	소하천정비요망	○ 운교1리 ~ 계촌간 군도주변 소하천정비 요망	○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후 '95 당초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 토록하겠음
	경지정리	○ 계촌저수지 건설과 연계 동지역 하류 농지 82ha중 미정리 전42ha 조기 경지정 리 요망	○ '94기본조사 설계 추진중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방림면	소교량 설치	○ 경지정리지구 소교량 설치 요망	○ 현지확인으로 타당성 검토후 '95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계촌주차장 포장 사업	○ 계촌주차장 포장 마무리 요망	○ 계촌 주차장포장사업은 '94 2회 추경에 반영, 예산 확정되면 사업추진할 것임
	국도보수	○ 방림3리 2반 42번국도 노면포장 마무리 및 낙석방지 시설 요망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 연차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임
용평면	지역 균형개발	○ 지역균형 개발 적극 추진 요망	<p>○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자체지역개발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p> <p>○ 1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한후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있음</p> <p>○ 장기적인 계획으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후에는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봄</p>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용평면	'94.5.19냉해피해	○ 냉해피해 농가 보상 문제 적극 검토 추진 요망	<p>○ '94. 5. 19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농가중 소생불가능한 작물에 대하여는 도비 25%, 군비25%, 자부담50%로 대파대지원</p> <p>- 대파대지원기준 : ha당 880천원</p> <p>○ 읍면별 지원계획</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ha,천원)</p>		
			읍면	면적	지원액
			계	168.1	147,928
			방림면	44	38,720
			대화면	46.3	40,744
			봉평면	17	14,960
			용평면	20.9	18,392
			진부면	37.5	33,000
도암면	2.4	2,112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진부면	밭 정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진부2리 밭 정리시 나온 돌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토개량시 채굴된 암석은 농토개량 및 농지보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채굴된 암석의 타지역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의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가지 보도블럭 일체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보도블럭 일체정비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보도블럭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95예산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나, 타사업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시행이 불가능 할시 년차사업계획에 의거 시행코자 함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진부면	의용소방대 송정택지지구이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 출입도로가 협소하여 조기출동지난 송정택지 지구로 소방대 이전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부 의용소방대는 진부 면사무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약45평)과 진입로폭(약8m)의 협소로 소방차 출동시 통행에 곤란은 물론 청사 사무실 협소 및 주차난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본군에서는 진부의 신도시개발과 중부내륙거점도시화에 따른 진부면청사의 현대화 계획으로 송정택지 지구 주위에 면청사 및 의용 소방대 청사이전 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진부면	고수부지 마무리	○ 고수부지 우기이전 마무리 요망	○ 하천관리부서와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협이가 원활하게 진전될 전망 임 따라서 협이가 되면 7월중 착 공하여 빠른시일내 완료 계획 임
	군도 확.포장	○ 관내 군도 조기 확 포장 마무리 요망	○ 군관내 군도노선은 16개노선, 연장 254.6Km로써 일부 특정 면에 집중 투자할 수 없는 실 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노선을 계속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 계획임
	소교량 가설 요망	○ 화의리 소교량 가설 요망 ○ 거문리 2반 교량가설 요망	○ 사업효과 분석 후 '95당초 예산에 반영 사업추진 계획 임 "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체육공원시설요망	○ 다수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체육공원시설 요망	○ 문화체육부의 체육시설 연차 계획에 의거 '95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하겠음
	도시계획 재정비	○ 도시계획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요망	○ 황계도시계획은 '89년 재정비 되어 '95년 재정비 가능하며 '95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 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비 할 계획임
	관광객유치 적극 추진	○ 도암호 주변 적극 개발 관광객 유치 기본시설 적극 추진 요망	○ 도암호는 종합관광휴양지역인 용평리조트와 인접된 지역으로 주위경관이 수려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할 것이 예상되는 바 본 지역은 외지자본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농원 등으로 개발하여 민박이나 펜션등의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음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횡계 인터체인지 설치	○ 영동고속도로 횡계 인터체인지 설치요망	○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한 사항이며 현재도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음
	복지회관설치요망	○ 도암면 복지회관설치요망	○ '93년도 도지사와 도암면 주민과의 대화시 동일한 건의 사항으로서 답변한 사항임 ○ 별도 신축계획이 없으며 추후 도암면 복지회관 건립은 부지 확보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도암면 청사 신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청사내 복지회관을 병행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가축분뇨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폐수로 인한 상수원 보호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맑은물 자원화를 위한 하천 구역 담당편성운영 - 감시구간 담당반 편성 - 반장 : 축산과장 (제1조) : 가축위생계장의 2명 구간 - 횡계삼정평~횡계2리 (고속도로다리) (제2조) : 축산계장의 2명 구간 - 횡계2리 (고속도로다리) ~ 도암댐 -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 . 주1회 이상 순찰 . 하천오염 실태 조사 . 하천정화 활동 실시 . 기타 불법 행위 단속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유천출장소 울타리 설치	○ 유천출장소 울타리 마무리 요망	○ '95당초예산 반영예정 - 사업시기 : '95상반기 - 사업비 : 12,400천원 - 사업량 : L = 124m H = 1.5m
	유천경유도로 갓길 포장	○ 유천 경유도로(지방도) 협소로 사고빈발 갓길포장 요망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갓길포장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음·면건의사항

邑面健議事項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평창읍	후평~계장간농어촌도로 보수	○ 도로노면 심히 훼손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초래	○ '94 제1회추경시 예산계상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시 계획에 반영 년차적 추진계획
	취락구조개선마을 진입로 포장	○ 2개리 50여 가구의 진입로 미포장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초래	○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연차 계획에 의거 '95년에 포장 시공토록 하겠음
	평창시가지 주차장 확보	○ 차량증가로 시가지 주정차 장소 협소	○ 노상, 노외주차장의 표시를 재정비 한후 불법주정차 행위를 중점단속 토록하여 ○ 시가지 중심에서 변두리지역의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분산 주차토록 유도 하고 ○ 차량소유자들의 주정차 질서 의식을 고취 하도록 지속계도 할 것임.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방림면	운교리 폐국도 포장사업	○ 방림-안흥간 42번 국도 확포장으로 노선변경 폐국도 관리 소홀	○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국도 관리청 이관받아 놓어촌 도로로 지정하고 놓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계획임
	소하천 교량가설 사업	○ 주민교통 불편 및 농산물 반출 지남	○ 현지 확인후 사업타당성 검토 하여 '95 당초예산 반영
	계촌주차장포장 사업	○ 계촌지역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장애 및 사고 우려	○ 계촌 주차장 포장사업은 '94 2회 추경에 반영, 예산확정되면 사업추진 할 것임
	방림지역상수도 사업	○ 간이상수도 이용으로 한해시 수돗물 공급 지연 및 소량으로 주 민불편 초래	○ 방림지역 간이급수시설 보강 추진 - 예산확보 : 100백만원 ('94 1회추경) - 사업추진 . 측량설계 : '94. 8. 20 . 공사기간 : 농작물 수확후 추진 ('94.10~11.30)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방림면	운교3리~문재간 구국도 보수요청	○ 42번국도확·포장및 노선변경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교통불편	○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국도 관리청 이관받아 농어촌도로 로 지정하고, 농어촌도로 정 비계획에 의거 정비 계획임
	방림1리지역 하천 제방 편입부지 보상	○ 수해복구공사 제방 편입 부지 보상 미 실시로 민원발생	○ '90수해복구사업시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는 보상비 확보 가 어려우나 추후 하천편입 용지보상시 보상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대화면	평창문화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	○ 확보예산 부족으로 사업착공 지연	○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94설계 ⇒ '95시설공사) 시설공사비 680백만원은 '95당초예산에 확보 사업시행 계획임
	수원상류지역하수 관로 연장시설 지원	○ 수원상류지역100여구 집단마을 위치로 생활하수 하천 직유 입으로 수질오염	○ 하수도시설 계획은 현지확인 후 처리계획 수립 조치 ○ 현 대화 상수원 보강계획을 수립 추진(대화3리 용천수) : '94 1회추경 반영 (60,000 천원)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봉평면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	○ 통과교통량증가로 시가지 교통장애 초래	○ 면은, 무이리일대에 조성중인 보광 스키장등이 개장되면 이용차량 및 이용객이 증가하여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임 ○ 사업시행청인 원주지방국도 관리청에 건의하여 조기사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차장 설치사업	○ 주차공간 미확보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후 보유차량수 등의 여건을 검토한 후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확충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을 강구 할 것임
	도시계획의 부분 수정	○ 도시계획상 용도상이 용도변경 및 확대	○ 봉평도시계획은 '95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봉평면	가산공원조성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내 건축물 신축 및 미관저해 가옥 철거 - 사업장 : 2동 - 사업비:2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가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현 공원부지에 위치한 성황당 1동을 철거 후 공원을 조성하였는 바 - 가산공원의 성격 및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공원내 성황당의 재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가옥철거 : '95가산공원 마무리 계획에 포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사업비 : 31,000천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철거 : 1동 10,000 . 화장실설치 : 1동 10,000 . 음수대 설치 : 1개소 2,000 . 종합안내판 설치 : 1개소 3,000 . 가로등 설치 : 6개소 6,000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봉평면	보래령 도로개설	○ 시·군간 주민교류 및 생활정보 교환	○ 보래령 도로개설은 창동리- 보래령 - 홍천내면에 걸쳐 국도승격건의 노선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음 ○ 국도승격이 불가시 홍천군과 개설계획 협의 군도노선으로 추진 계획
	남안대교신설사업	○ 노후교량으로 사고 위험과다	○ 생가터와 연계된 남안교는 1981년 가설된 교량으로 구조 상 노후교량이 아니며 일부 국소적 부분(난간등)의 정비 만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본 교량과 연계된 농어촌도로 노선 정비시 교량 보수등 검 토하겠음
	농가주택물량증배 요망	○ 농가주택개량 희망 농가증가로 물량부족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량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강원도에 건의하여 계속 물량 을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임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봉평면	국민주택 배정 요망	○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이주대상가구에 대한 대책	○ '86년 이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택사업이 폐지 되어 주택은행에서 건축주가 직접 대출을 받아야하므로 군에서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은 불가능함
	취락지역 지정	○ 휘닉스파크 개발과 관련 면은지구 인구 증가 예상	○ 봉평면 면은리는 '94. 1. 24 건설부 고시 제1994-18호로 0.234km ² 가 취락지구로 국토이 용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었 음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이상저온(-5℃)으로 농작물 360ha피해	○ '94. 5. 19 저온현상으로인한 냉해피해농가중 소생불가능한 작물에 대하여는 대파대 지원 대파대 지원기준 : ha당 880 천원 - 지원액 : 147,928천원 (168.1ha)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및 다세대 건물 신축 및 고원도시 추세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관노후 누수 로 수량부족 현상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를 향한 상수도사업 계획"에 의거 '96이전 확장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 9,000T/D - 소요예산 : 7,088백만원 ○ 누수방지사업의 추진 수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하수전탐사 563전, 관로탐사 10.2Km - 추진기간 : '94. 4. 18 ~ '94. 6. 16 - 소요예산 : 18백만원 - 누수지점 색출 수리실시 : 16개소 ○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관로교체 585m - 추진기간 : '94. 5. 23 ~ '94. 8. 20 - 소요예산 : 95백만원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횡계8리 협동교 확장	○ 차항천과 횡계시가지 배수구 합류 지점 교량 협소로 장마철 인근주택 및 농경지 피해	○ 현지확인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95 당초예산에 반영
	도암면 복지회관 신축	○ 관내 예식장이 없으므로 강릉등 외지 이용으로 주민 경비 과다 소요	○ 별도 신축계획이 없으며 추후 도암면 복지회관 건립은 신축시 부지확보 예산이 과다히 소요되어 도암면 청사신축시 병행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횡계7리 교량가설	○ 우천시 세월교 범람으로 통행 불가	○ 하상정비계획에 의거 '94. 7 월중에 하상정리를 완료할 계획임
	면청사 신축	○ 현청사 협소 및 노후와 고원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급증	○ 사업비 - 총 : 1,323백만원 - 기 확보 : 60백만원 - 1회 추경 : 300백만원 - '95당초예산 : 963백만원 ○ 사업량 : 601평

邑面別	事業名	建議要旨	檢討結果
도암면	경광등 설치 (6개소)	○ 관광·휴양인파등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국·군도상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 있으며 ○ 예산을 확보 지속추진계획 임
	행정장비 보강	○ 업무용 차량 노후로 오지마을 운행 불가 및 차량 수리비 과다 소요	○ 차량 내구년수에 의거 '95당 초예산반영 상반기 교체 - 사업비 : 15백만원 - 사업량 : 짚넨 1대